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만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323 발의연월일: 2025. 2. 21.

발 의 자:이만희·권영진·구자근

이종배 • 김소희 • 김기웅

조은희 · 서천호 · 김상훈

김예지 • 박덕흠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, 위반 시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, 맹견 을 제외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동물 유기는 동물 복지와 생명 존중 등 국민 의식을 훼손하고 구조 및 보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범죄 행위임에도, '2023년 반려동물 보호·복지 실태조사'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유기된 동물은 총 113,072마리에 달하는 실정으로 이에 대해 벌칙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맹견을 제외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하여 기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 성하려는 것임(안 제97조제4항제1호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7조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제1호를 삭제 한다.

1.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(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제외한다)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97조(벌칙) ① ~ ③ (생 략)	제97조(벌칙) ① ~ ③ (현행과		
	같음)		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4		
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			
벌금에 처한다.			
<u><신 설></u>	1.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		
	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		
	(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제외		
	<u>한다)</u>		
<u>1.</u> ~ <u>8.</u> (생 략)	<u>2.</u> ~ <u>9.</u> (현행 제1호부터 제8		
	호까지와 같음)		
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5		
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			
벌금에 처한다.			
1.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	<u><</u> 삭 제>		
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			
(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제외			
<u>한다)</u>			
2. ~ 12. (생 략)	2. ~ 12. (현행과 같음)		
⑥ (생략)	⑥ (현행과 같음)		